

자동차 보험 특별약관

특별약관이란 보험회사와 개개의 계약자간에 기본계약내용이외에 별도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을 말하며,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약관을 말한다. 따라서 특별약관은 각 개인이 계약시 충분히 인지하여야 한다.

1. 가족운전자 한정 운전 특별 약관

사례 1 자녀 친구의 운전 중 사고

○○씨는 아버지 소유의 승용차를 빌려 친구와 교대로 운전하다가 친구가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씨 아버지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가족 운전 한정 특약 선택)이 때 보상이 가능할까?

답) 가족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범위를 가족 구성원으로 한정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특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된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보험 처리가 안되며, 그 대신 보험료를 약 30% 정도 할인해준다.

사례 2 며느리가 운전 중 사고

○○씨는 시부모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경미한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이때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 보험 서류에 ○○씨의 이름이 없는 데 보상이 될까? (시부모님의 차량은 가족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

답) 기명 피보험자(차주)의 며느리는 가족 운전 한정 특약에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상이 된다.

■ 기명 피보험자(차주) 가족의 범위

- 1)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 2)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

- 3)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4) 자녀(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양녀)
- 5) 며느리와 사위

2. 운전자 연령 특별 약관

사례 3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 위반 사고

○○씨는 본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자 연령 만 24세 이상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해 놓았다. 며칠 전 23세의 아들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보상이 가능할까?

답)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은 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를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으로만 24세 이상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된 차량을 23세 운전자가 운전을 해서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세 · 24 · 26세로 한정하는 경우로 이 때 연령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험 회사별로 차종에 따라 적용률에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 연령이 운전 가능한 조건과만 26세 이상 한정 운전 특약과 비교하면 26세 이상은 약 30%까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보험 기간 중이라도 운전자가 추가되거나 나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연령 한정 특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 약관

사례 4 교대운전중사고

○○씨는 지난 여름 친구와 부부동반으로 피서를 갔다오는 중에 친구의 차를 운전 중 빗길에 미끄러져서 도로 옆에 정차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이런 경우 보상이 될까?

답) 사고 차량이 가족 운전 한정 특약에 가입한 차량이라면 친구의 자동차 보험으로 책임 보험은 보상이 되지만, 종합 보험은 보상이 안된다. 하지만 ○○씨가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자 손해 담보'에 가입하고 있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상해 담보에 가입하면 자동 적용되는 특약이다.

보상되는 담보는 대인 배상 II · 대물 배상 · 자기 신체 사고 담보를 보상하고 자기 차량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대인 배상 I 이 빠진 이유는 운전자 거의가 피보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운전했던 차량의 보험으로 보상 처리가 된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 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서 자가용 승용차 및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기명 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 자동차가 경 · 3종 · 4종 · 5종 승합 자동차간 에 그리고 경 · 4종 화물 자동차간에는 보상 처리가 가능하다.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 약의 혜택을 부여하는 차종은 배기량이 800cc이하 이고 차량의 장폭이 35m×15m이하인 경 · 승합 자동차, 법정 승차 정원 11인 이상 16인 이하의 3종 승합차, 법정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 중 전방 조정 자동차인 4종 승합차, 법정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

동차 중 전방 조정 자동차가 아닌 5종 승합차를 말하며 이들 승합 자동차의 기명 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무 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때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남을 사상한 경우 및 남의 재물에 끼친 대인 · 대물 손해를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처리하고, 본인 및 그의 배우자도 자기 신체 사고로 보상 처리 받을 수가 있다.

또한, 화물 자동차의 경우에도 기명 피보험자가 개인으로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 처리 받을 수가 있는데, 4종 화물 자동차 중 배기량이 800cc 이하이고 차량의 장폭이 35m×15m이하인 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는 전술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위에서 설명한 자동차 중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 피보험자 및 그의 배우자이므로 기명 피보험자 및 그의 배우자 가 운전 중인 사고는 보상 처리 받을 수가 있으며 자녀 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타차 운전 특약은 따로 보험료를 더 내고 가입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담보 중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 가입하면 추가 보험료 없이 자동적으로 가입 되며 개인 소유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만 가입할 수 있다. 